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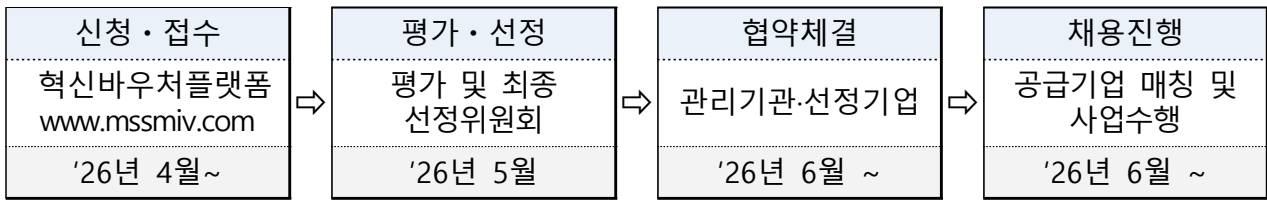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인력 채용 지원
- 예산규모 : 10억원
- 사업기간 : 선정 후 ~ '26. 8월말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채용대행(헤드헌팅) 수수료의 일부(기업별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지원 사업 기술인력 요건

- ①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②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③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⑤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⑥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지점(비수도권)의 경우는 별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신청 제외 대상

- ◆ 기술인력이 신청기업에 최근 1년 이내에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
- ◆ 기술인력이 대표자 및 등기임원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경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 휴·폐업 기업
-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타 사업에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 인력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
- ◆ 신청일 현재 '26년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정부보조금 기준 선정금액이 금번 신청금액과 합산하여 5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6. 4. 20. ~ '26. 5. 6.

-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완료 시 수정불가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수행 사업장(비수도권) 기준으로 신청

□ 신청시 유의사항

- 하기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선정 후 바우처 협약*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신청 불가

* 바우처 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완료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 계약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차년도 신청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서비스 계약(운영기관-공급기업-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완료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사업 완료 후 수요기업이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업 부담으로 서비스 대금 지급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가능

◆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불가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 비수도권 소재기업만 신청가능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별첨3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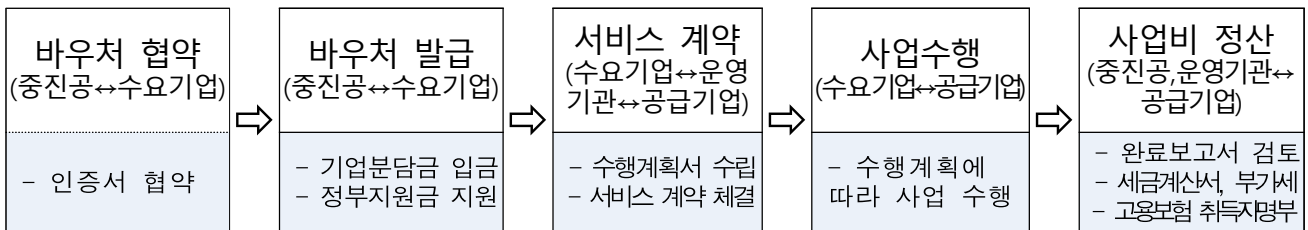
- 고용인원 수와 상관없이 채용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채용비용에서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이 10백만원을 넘지 못함

- (지원내용) 채용대행(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 채용대행(헤드헌팅)수수료의 일부 지원
 - 고용유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하므로 8월말까지 채용완료 및 고용보험 가입하여야 지원 가능

채용지원 사업 기술인력 요건

- ①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②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③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⑤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⑥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 (보조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75~85% 차등 지원(별첨4 참고)

구분	비수도권	농어촌인구감소지역(우대)	농어촌인구감소지역(특별)
정부지원 비율(보조율)	75%	80%	85%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8월말까지 채용계약 완료 권장

※ 12월 10일까지 최종결과물(고용유지 증빙서류 등) 제출

채용 증빙서류	① 채용비용 관련 계약서 / ② 채용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청구) / ③ 자부담분 및 부가가치세 입금 확인 서류 / ④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월평균 보수 표시) / ⑤ 해당 인원의 근로계약서 / ⑥ 해당 인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최근 1년) / ⑦ 기술인력 증빙(졸업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

○ (신청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서비스*** 활용 제출
 - * 원클릭 서비스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23년, '24년, '25년)·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대상 추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문의처

구분	전화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시범사업	055-751-9855, 9523, 9851 9254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별첨 1**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채용지원 사업계획서 등 서식****【서식 1】 사업 계획서****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채용지원)****1 기업 개요**

업체명		대표자명	
책임자명		직 위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 소개	주요 연혁, 생산품, 판매처 등		

2 바우처 활용 계획(직무기술서 작성 필수)

채용직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직무명 : (ex 기업부설연구소장) ■ 세부 활용 계획 : (채용인원, 업무내용, 일정, 목표 등) ■ 임금 등 채용조건 : (급여, 직급 등)
채용직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직무명 : (ex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 ■ 세부 활용 계획 : (채용인원, 업무내용, 일정, 목표 등) ■ 임금 등 채용조건 : (급여, 직급 등)
채용직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직무명 : (ex 생산라인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책임자) ■ 세부 활용 계획 : (채용인원, 업무내용, 일정, 목표 등) ■ 임금 등 채용조건 : (급여, 직급 등)

* 직무별로 구분하여 작성, 직무 구분에 맞게 삭제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고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에 작성

3 채용대행 업체 활용계획

기업명	예정된 채용대행업체 명칭
활용시기	
내용	채용대행용역의 내용 및 협업 및 활용계획

【서식 2】 직무기술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직무기술서(필수서류)

채용직군	연구원	채용직무명	스마트공장 연구원
NCS 기반 직무 분류체계 (www.ncs.go.kr 공정채용 가이드북(고용부) 참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5. 기계	11. 스마트공장	01. 스마트공장 설계	06. 스마트센서활용설계
주요업무	공정데이터 수집분석 및 비전인식기술 지능화를 통한 제어기술 연구		
직무수행 내용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및 이상탐지(Anomaly detection) 분야 인공지능모델 설계 및 구현 비전센서 기반 공정 감시/이상탐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교육요건	학력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전공	기계공학, 전산 및 컴퓨터 공학	
필요지식	- (스마트설비설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에 대한 지식, IOT 센서/네트워크/데이터 통신 등 신기술을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지식, CAD/CAE 관련 지식,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활용 지식, 단위 구성 모듈의 제어 및 조합에 대한 지식, 센서의 종류/성능/특징에 관한 지식, 로봇의 종류/소프트웨어/하드웨어/말단장치 특성에 대한 지식, 로봇협업에 대한 지식, 안전 및 인간공학에 대한 지식 - (지능형영상정보처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기본 지식 (개발도구, 라이브러리), 국내외 영상처리기술 동향, 선행 기술 논문 및 특허의 특징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 알고리즘 구현방법		
필요기술	- (스마트설비설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구성요소 특성 파악/선정 및 운용 기술, CAD/CAE 관련 도구 활용 기술, 프로그래밍언어를 사용한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제어 기술, 디지털 및 아날로그 신호 분석 기술, 도면/설계 문서 이해 능력, 시뮬레이션 및 결과 후처리 기술, 로봇협업 및 원격 모니터링이해 및 운용 기술, 기계 및 전기적 안전 이해 능력, 영문 보고서 및 영어 논문 작성 기술 - (지능형영상정보처리) 영상데이터 구축 설계 (CCTV, image 등), 자료구조 표현 기술, 소프트웨어 설계능력,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및 패턴 인식 모델 구축 기술, 요구사항 분석 능력		
직무수행 태도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여 스마트공장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기여 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인공지능을 적용해야 할 분야가 전공과 다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상 도메인을 이해하고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자세, 적극적인 공유 및 협업 정신		
필요자격	해당없음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 정보능력, 수리능력, 자원관리능력, 직업윤리		
우대사항	스마트공장 설계업무 경력자		

* 직무별로 작성 필요(같은 직무를 2명 채용하는 경우 직무기술서는 1개만 작성)

별첨 2**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 평균 매출액은 '23년~'25년(표준재무제표 기준) 3년 간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3년.1.1 이전 설립 기업	- '23년, '24년, '25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3년 설립	- '24, '25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4년 설립	- '25년 매출액
'25.1월~'25.11월 설립	- '25년 매출액을 '25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5.12월 설립	- '25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6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개인 : 평균 매출액은 '22년~'24년(표준재무제표 기준) 3년 간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2년.1.1 이전 설립 기업	- '22년, '23년, '24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 '24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3년 설립	- '24년 매출액
'24.1월~'24.11월 설립	- '24년 매출액을 '24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4.12월 설립	- '24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5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5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26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2.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2년, '23년, '24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4.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4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4.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4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첨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건설업	F	
15. 도매 및 소매업	G	
16. 농업, 임업 및 어업	A	
17. 광업	B	
18. 담배 제조업	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1.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5. 수도업	E36	
26.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7. 정보통신업	J	
28. 음료 제조업	C11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폼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4

지방기업 우대 분류표

구분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 지역
서울	-	-	-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7개 자치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화천군
충북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